

“일터에 안심, 생활에 안정,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”



# 근로복지공단



수신자 대한한돈협회장 전 무 귀하  
(경유)

제목 농림어업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홍보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(시행 '24. 7. 1. 대통령령 제34601호)에 따라 **‘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·임업·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경영주**’는 본인의 의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.
3. 이에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, 관련 협회 등에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붙임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안내 1부. 끝.

근로복지공단이사장



수신자

차장	현채환	팀장	김보현	자격관리부장	이경란	국장	전결 07/24 김입수
협조자	팀장	이승호		접수			
시행	자격관리부-14298						
우	44428	울산 중구 중가로 340					/ http://www.comwel.or.kr
전화	0527047264	전송 0505-290-2120		/ mirthjh@comwel.or.kr			/ 비공개(6)

#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 안내

## □ 법령개정 주요 내용 (’24.7.1. 시행)

- ❖ (근로자)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
- ❖ (경영주)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및 사업자등록 없는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

## □ 근로자 가입

### [ 4인이하 농림어업종사 근로자 가입제도 비교 ]

구 분	개정전	개정후
가입신청자	▪ 사업주	▪ 사업주, 근로자
가입신청 효력	▪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	▪ 「농림어업 근로자 가입(가입탈퇴) 신청서」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
탈퇴신청자	▪ 사업주	▪ 근로자
가입단위	▪ 사업(소속 근로자 전체)	▪ 개인단위(근로자 개인별 가입)
가입요건	▪ 근로자 과반수 동의	▪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

- 비법인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가능(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취득)
  - (상용근로자) “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(가입탈퇴) 신청서” 제출
  - (외국인근로자) “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” 제출
    - \* 대상체류자격: C4, E1 ~ E10, F4, H2 F2, F5, F6, 상호주의 D7 ~ D9
  - (일용근로자) “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”와 “일용근로내용신고서” 제출
  - (신규성립)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